



경상북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0000년도 단체협약요구(안)

0000. . .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0000년도 단체협약요구(안)

전 문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한 근본 취지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복리를 증진하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공무원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교육감과 조합 및 조합원에 적용한다.

제2조【성실의 의무】 교육감과 조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

제3조【자치법규의 제·개정】 교육감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 및 훈령(행정지침 포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우선 및 조합 활동 권리 저하의 금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

제2장 조합 활동

제5조【노동조합 활동 보장】 ① 교육감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조합 운영에 대하여 방해 또는 개입하지 아니하며,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②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중에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 총회
2. 정기·임시 대의원대회, 상집위원, 상임위원 회의
3.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및 상급단체 회의 참석
4. 기타 교육감과 조합간 합의한 사항

③ 교육감은 공무원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연수 시 신규직원 연수(2시간 이상) 및 전문교육 개설(가급적)시 공무원노동관계 관련 교과목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④ 교육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 지역별로 학교의 동·하계휴가 중 각 2시간의 조합원 연수시간을 부여한다.

⑤ 교육감은 조합 및 지부의 중요간부(선출직)에 대한 인사발령 시 노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6조 【부당노동행위금지】 교육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7조 【시설편의 제공】 ① 교육감은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등 비품을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③ 교육감은 조합이 각종 회의 또는 교육을 위하여 장소, 통신 및 방송망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교육감은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학교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당해 기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하도록 지도한다.

제8조 【조합의 교육행정관련 행사 지원】 교육감은 경북교육 발전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행정 관련연구 행사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통지의 협조】 교육감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 통지 하도록 협조한다.

① 교육감이 조합에 통지할 사항

1. 공무원단체관련 각종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폐(홈페이지 게재로 대체가능)
2. 지방공무원의 정기 인사발령 사항
3. 교육청 및 산하기관 기구표
4. 교육통계연보 및 교육수첩
5. 각급 학교로 발송하는 공무원단체 관련 공문

② 조합이 교육감에 통지할 사항

1. 규약·규정의 변경사항
2. 조합기구표 및 조합 임원 명단
3.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제10조【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 ① 교육감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및 조합 활동에 필요한 문서·자료·정보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조합활동과 관련한 문서를 교육청에 발송한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내용이 소속기관에 통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문서로 통보한다.

제11조【홍보활동보장】 ① 교육감은 조합이 각급 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조합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공무원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연수 및 신규공무원 임용연수 시 노동조합에서 요청 할 경우 1시간 이내의 노조 홍보 활동을 위한 시간을 부여 할 수 있다.

제12조【설문조사 협조】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근무여건 개선 및 경북 교육발전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청 홈페이지 등의 이용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13조【근로조건 복지 관련 위원회의 참여】 교육감은 위원회 안건 중 조합원의 근로조건, 권익, 복지, 보수(성과상여금) 등과 관련된 안건

은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노동조합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주요 행사의 참석】 교육감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 워크숍, 각종 행사 중 노동조합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3장 인사 및 조직

제15조【인사원칙】 ① 교육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운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인사원칙 및 제도를 수립, 변경하고자 할 때나, 매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방공무원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노동조합은 각종 인사 및 인사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의견에 대하여 검토 후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④ 교육감은 인사제도의 운영 및 인사 관리를 함에 있어 성별, 임신, 출산휴가, 육아휴직,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소통창구 활성화를 통한 의견제출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협의체 정례회를 연 2회 개최한다.

제16조【인사제도 개선】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인사운영과 관련한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인사행정에 대한 불만 및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일반승진 요인 발생 시 조속히 일반승진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사무관(5급) 승진제도 개선 시 노동조합과 사전 의견 수렴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무관 승진제도를 개선하고 일선 학교에서도 승진 기회를 갖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감은 법령에 명시한 근속승진 제도를 준수한다.

⑤ 교육감은 임용(징계, 질병 등 제외)에 따른 인사발령 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기관별 정·현원 및 임용 등과 관련된 인사통계자료를 필

요시 노동조합에 제공한다.

제17조【공정한 전보제도 개선】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전보 시 공개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보직관리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전보제도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필요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 기관(학교) 통폐합 및 정원조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전보하고자 할 경우 공무원의 희망지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④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기관장 전보 요청 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⑤ 교육감은 본청(직속기관) 전입 공모 시 선발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고, 선발 인원, 대상 및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⑥ 교육감은 전보 시 공정한 순환 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학교,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간 실질적인 인사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노력한다.

⑦ 교육감은 정기인사 전에 지방공무원 기관(부서) 만기예정자 자료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⑧ 교육감은 전보 유예자에 대한 명단 및 사유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18조【인사위원회 등 조합원 참여】 ① 교육감은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인사기준을 수립한다.

1. 교육감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명을 위촉한다.

2. 인사기준 수립 시에는 사전에 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기준을 수립 하도록 한다.

제19조【조직·인력의 적정배분 및 유지】 ① 교육감은 근로강도 강화, 근무환경 변화 등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되는 조직 개편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한 객관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한다.

- ② 교육감은 조직개편, 직종(직군, 직렬, 전직)개편 등과 관련하여 본청 및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일방적으로 조정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조정이 필요할 시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 정원 책정기준 수립 시 업무량과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하며 각급 학교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감은 공무원의 퇴직 등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직렬별로 신속히 충원하여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을 충원한다.
- ⑤ 교육감은 5급 학교행정실장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행정실장 직급을 6급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한다.
- ⑥ 교육감은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전문직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이 당초 확정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총액인건비제 예산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한다.
- ⑦ 교육감은 관할 전체 조직의 업무 진단을 통해 조직·인력을 적정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조직진단(외부용역실시)예산을 편성한다.
- ⑧ 교육감은 소수직렬 상위직급의 정원 책정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거 다른 직렬의 상위직급 비율과 타시도 비율 형평성에 맞추도록 한다.
- ⑨ 교육감은 각급 학교 행정실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행정실을 확대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⑩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급식 점검, 유해업소 점검 등 보건업무의 증가에 따른 보건직공무원의 충원 노력을 통해 보건직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 ⑪ 교육감은 새로운 회계시스템 도입 등 갈수록 증가하는 학교 행정업무를 감안하여 지방공무원을 증원되도록 노력한다.
- ⑫ 교육감은 학교 행정실 근무 지방공무원 결원 발생 시 책임감과 전문성 있는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⑬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일반직 과장급 보직이 2개 이상인 지역은 선임과장직급 및 선임 담당직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제20조【일반직 공무원 처우 개선】 ①교육감은 법령에서 정한 일반직의 상위직급 정원 비율이 타시도 비율 형평성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교육감은 소규모학교 1인 행정실장의 근무여건 및 인력확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소되도록 노력한다.

③교육감은 공립 유치원 행정전담 인력이 연차적으로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④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 교육공무직 급여 이관을 위한 인력을 충원하여 행정실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한다.

⑤교육감은 중요직무급 수당 신설에 따라 선정 대상 범위가 확대 되도록 노력한다.

제21조【전보 인사시 조합원의 고충 및 민원 반영】 교육감은 정기 인사시 지방공무원의 인사 고충과 민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2조【지방공무원의 인사발표 시기 개선】 교육감은 정기인사(1월,7월)시 7일 전 인사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3조【인사예고제 실시】 ①교육감은 정기인사 시 승진과 전보에 관한 인사개요를 예고하도록 한다.

②교육감은 승진 등을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퇴직예정자 현황 등)를 공개한다.

③교육감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제24조【모범공무원 등 표창제도의 합리적 개선】 ①교육감은 표창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수상자의 재직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안배를 기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가 선발 될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공정한 인사제도 정착】 ①교육감은 근무평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②조합은 노동조건개선 및 근무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정원확대를 요구하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③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필수실무요원 선발인원 및 기준을 직렬별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

제26조 【도교육청 근무자 기준 개선】 교육감은 도교육청 근무자를 선발할 때 학교근무 경력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7조 【도서관 전담인력 확보】 ① 교육감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도서관법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 공공도서관 근무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시 인력의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무운영직렬의 정원을 일반직 전환 할 시 사서직 정원으로 충원되도록 노력한다.

제4장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제28조 【소수직렬 처우 개선】

① 교육감은 학교통학차량 운전원의 조기 출근에 따른 시간외 근무 시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

② 교육감은 시설관리직 및 운전직렬 퇴직에 따른 미채용으로 인한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현장의 결원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③ 교육감은 시설관리직의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시설유지비(각급학교 내 환경 정비를 위한 수목정리 및 잡초제거 등의 외부용역비)가 편성되어 집행되도록 지도한다.

④ 교육감은 시설관리직렬 지방공무원 등 현장에서 시설물을 관리·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시설관리 전문교육(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및 민간외부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⑤ 교육감은 각급 학교업무분장 시 소속직원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용어(기타, 지시 등)는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각급 학교 업무분장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⑥ 교육감은 시설관리직렬의 근무여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29조【공무원 연수제도 개선】 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②지방공무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방공무원 6급이하 대상으로 장기교육훈련(6개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되도록 한다.

③교육감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대상자 선정 시 6-7급 희망자는 공로연수 기간과 대상자 선정 범위가 동일하도록 한다.

제30조【국외연수 확대 등】 ①교육감은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 기회 확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교육감은 노·사가 함께하는 노동문화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연수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제31조【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교육감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직장동호인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②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자율연수경비를 지원한다.

제32조【보직관리규정 정비 등】 ①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 시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②교육감은 조리직렬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3식학교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승진 가점 및 전보가점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며, 순환배치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제33조【호칭 개선】 교육감과 조합은 소속 공무원 간 상호 존중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보직이 없는 지방공무원의 호칭을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주무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한다.

제5장 단체교섭

제34조【합의서 작성】 ①단체교섭에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교육감과 조합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다.

② 교육감은 교섭체결 후 1월 이내에 제1항의 문서를 소속기관에 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5조【단체협약 이행】 ① 교육감은 단체협약 이행 결과를 반기별로 조합에 통보한다.

② 교육감은 협약 내용 중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후생복지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은 관계법령 및 예산 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6조【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지방공무원 관련 사항 사전 협의】 ① 교육감은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각급학교 행정실 등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가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37조【보충협약 기타】 교육감과 조합 쌍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장 근로조건

제38조【대체인력 지원】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출산 휴가 및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육아, 출산 등) 인력을 충분히 반영한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으로 결원 시 대체인력을 즉시 발령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39조【행정실 등 사무실 환경 근무여건 개선】 ① 교육감은 환경 개선에 따른 예산 요구가 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도교육청은 행정실이 미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학교자체 실정을 고려·설치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 행정실과 교무실이 통합 운영되지 않도록 하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공무원의 쾌적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조성을 위해 행정실을 별도의 공간에 최소 교실 한 칸(66m^2)이상의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40조 【업무대행】 ① 교육감은 운전원의 토요방과 후 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휴무 등 그에 상응하는 대가(시간 외수당)가 주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원이 연가 등 부재중일 경우를 대비한 업무 대행문제 해결 방안(예비기사 확보, 대체인력 인건비 확보노력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조리사의 연가 등 부재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비를 학교회계예산에서 편성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조리직렬 지방공무원에 대해 본인 희망에 따라 영양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교육감은 운전직렬 중 공동조리교로 급식 운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한다.

제41조 【당직실 근무환경 등】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당직실의 근무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당직수당을 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당직(일·숙직)을 할 경우 다음 날 종일휴무가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④ 당직(일·숙직)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및 불가피하게 휴무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휴무를 부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2조 【공무원 피복】 교육감은 학교 실정에 따라 아래 직원에 대하여 교단지원에 필요한 피복비 및 안전용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1. 방호원, 사무원(외근) 및 조무원 : 작업복 및 안전화
2. 조리사 : 위생복 및 위생안전 장화

3. 운전직 : 운전복 및 안전화(외근)

제43조 【협의회 개최】 ① 교육감은 제5조제2항3호 노사협의회와 관련하여 반기별(6월, 12월)로 개최하며, 협의 안건은 개최 10일 전에 통보한다.

② 노사협의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협의회 개최를 위해 대표자를 교육감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 및 관련 업무부서 장이 참석한다.

제44조 【근무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급적 직원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기존 교원 휴게실을 직원 휴게실로 활용토록 한다.

② 교육감은 조리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사 휴게실을 별도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④ 교육감은 교직원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⑤ 교육감은 천재지변이나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휴업 또는 온라인수업을 운영 할 경우 초등학교 이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제45조 【직원 동원 최소화】 ① 교육감은 교육청과 관련이 없는 외부행사(시험감독 등)에 지방공무원의 동원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학기초 연수 및 각종행사 개최를 최소화 하며 지방공무원의 참석을 강요 하지 않는다.

제46조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마음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제7장 교육재정

제47조 【학교회계전출금 편성비율 조정】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당 경비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48조 【예산집행의 적정성】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학교회계에서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제49조 【예산의 합리적 편성】 예산의 편성은 즉흥적이거나 일회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편성되도록 노력한다.

제8장 공무원 권리보장

제50조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 ① 교육감은 가정친화적 제도 운영 확대를 위해 출산휴가, 육아시간, 모성보호휴가 등 관련 특별휴가가 활성화 되도록 안내하고 관련 특별휴가 사용으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과다한 업무지시를 자제하도록 노력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당직(일직) 근무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당직근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본인 동의를 얻어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교육감은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게 노·사합동으로 출산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1조 【직장보육시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에 적극 노력한다.

제52조 【직장 내 성범죄 및 폭행 예방】 ① 교육감은 성폭력(성희롱)범죄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언어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신,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교내, 외 전문상담기관이나 병원과 연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교육감은 사실관계 확인결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로 밝혀질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하여야 한다.

제53조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교육감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제54조 【맞춤형 복지비 인상】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맞춤형 복지비가 지자체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맞춤형복지비 중 특별건강검진비는 나이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지원되도록 한다.

제55조【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 휴양시설 이용료(연 30만원)가 지원 될 수 있도록 한다.

제56조【직무관련 소송지원 등】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적극 지원을 한다.

제9장 행정 제도 개선

제57【행정실 업무 개선 방안】 ① 교육감은 교원업무경감 실시로 교원업무가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 나 규정에 의거 환경위생관리업무(먹는 물 관리, 공기 질 관리, 석면 관리 등)는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학교에 공문으로 시행하여 행정실과의 갈등을 해소한다.

③ 교육청은 방과후, 돌봄강사 계약 및 회계 관련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되지 않도록 한다.

④ 교육청은 정보화 물품의 구입·유지·폐기, 학교유무선망 및 CCTV 관리와 같은 시설관리, 재난대응 대피훈련 등 안전관리 등의 행정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되지 않도록 한다.

⑤ 교육청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저소득층 지원을 포함한 교육급여 관련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되지 않도록 한다

⑥ 교육청은 산업안전법상 학교 전체의 안전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관리감독자(학교장)로 지정 되도록 한다.

제58조【방화관리자 업무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1인 행정실장 배치 학교에 대해서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59조【학교 시설공사 지원 업무개선】 ①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시설 공사 업무 지원을 위한 서포터즈제를 활성화하여 각급학교의 시설관리

가 전문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2,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전담을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시설직공무원의 연차적 충원·배치 노력을 함으로써 행정실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제60조【학교시설물 관리】 교육감은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1조【감사방법 등】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지도점검 등을 가급적이면 학년초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학교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정기종합감사를 면제한다.

제62조【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복잡한 업무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3조【조리종사원 인력배치 기준 변경 등】 ① 교육감은 원활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을 적정히 운영하고 위생 점검 시 현실에 맞는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학교 급식소 현대화 사업을 학교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4조【임기제 공무원】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자의 임용이 꼭 필요한 업무인지 면밀히 검토한 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임기제 공무원(개방형 직위 포함)을 채용한다.

② 교육감은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계획 수립, 계약기간 연장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장 교육부 등 관련기관 개선 요구 사항

제65조【행정실 법제화】 교육감은 학교 행정실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제66조【학비 보조수당 확대】 교육감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될 수 있게 건의한다.

제67조【필수실무요원 수당 인상】 교육감은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대우공무원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인상하도록 건의한다.

제68【가족수당 현실화】 교육감은 부양가족 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제69조【장애인보조수당 신설】 교육감은 공무원 본인과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월 50,000원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제70조【민원업무수당】 교육감은 각급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민원업무 수당이 지급되도록 건의한다.

제71조【소방안전관리자수당】 교육감은 각급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제72조【호봉상한제 폐지】 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의 불합리한 호봉상한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한다.

제73조【성과상여금 지급개선】 ① 교육감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근무일수 제외기간에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되지 않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한다.

제74조【초·중등교육법 개정】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2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를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로 개정되도록 건의한다.

② 교육감은 행정실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법제화되도록 노력한다.

제75조【도의회 서류제출】 ① 교육감은 도의원이 서류제출 요구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도의회에 요구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도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요구하도록 요청한다.

제76조【병설유치원 전담인력 확충】 교육감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

원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임하지 않도록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상부기관에
건의한다.

부 칙

제1조(유효 기간) ①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이행방법) 교육감은 단체협약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조합에서 이행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지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한다.

제3조(협약의 보관) 본 단체협약을 증거 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 하며 교육감과 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1부를 신고한다.

제4조(관계법령의 준용)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0000년 월 일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